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8누5948]

사건명 : 승무 중 직무외 질병 결정 처분 취소

원고 : 원고1

전남 신안군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A

피고 : 수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론종결 : 2019. 4. 4.

판결선고 : 2019. 5.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승무 중 직무 외 질병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4, 7, 8행, 제5면 4행의 "새우젓"을 "것새우"로, 제4면 1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2. 이 법원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 가. 추가로 판단하는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질병 발생 무렵인 2016. 6.경 ○○호가 ○○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판매한 금액이 종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직전과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하였고, 장기간 출항하여 조업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질병 발생 무렵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갑 제1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수 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병 발생 무렵 ○○호의 위탁 판매 금액이 증가하였다거나 원고가 장기간 출항하여 조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직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질병 발생 무렵인 2016. 6.경 ○○호가 위탁판매한 금액이 종전에 비해 급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탁판매 금액은 젯새우의 품질과 시가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2016. 6.경 위탁판매 금액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질병 발생 무렵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한편, 원고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고 젯새우를 어획하거나 선별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선원들이 수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어획량이 일부 증가하였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질병 발생 전 장기간 출항하여 조업하였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보험법'이라고 한다)에서는 어선원의 재해 인정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법과 달리 직무상 질병이 아니더라도 승무 중 질병에 걸린 경우까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는 어선원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의 명확한 구분이 없고 한 번 출항하면 장기간 동안 어선에서 조업, 휴식 또는 숙식까지 겸하는 경우가 있는 등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질병 발생 전 1주 동안 총 168시간을 승선하였는데, 그 중 실제 조업일은 3일로, 조업시간은 30시간, 조업 중 대기시간은 12시간, 조업을 하지 못한 시간이 56시간, 나머지 수면시간은 70시간이었다. 또한 이 사건 질병 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승선 시간은 총 168시간이었는데, 그 중 조업시간은 25시간, 조업 중 대기시간은 12시간, 수면시간은 70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호증 3, 4면 참조)

③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앞서 본 바와 같이 어선원의 경우 업무 환경에 특수한 사정이 있고, 어선원재해보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법을 준용하면서도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따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어선원이 조업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나 수면시간까지 그대로 어선원의 업무시간으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 원고가 대기시간 중 대기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존재하였고, 수면을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10시간의 수면 시간이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 5면 참조), ㉢ 원고는 선장으로서 조업 시간 동안 선박을 운항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조업을 하지 못하는 시간에는 원고의 업무강도가 상당히 낮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질병 발생 무렵 장기간 출항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업무 시간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2, 판사3